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8. 10 선고 2020가단20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31812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8. 10 선고 2020가단2005 판결

##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필재(소송구조)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윤성현, 김용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류호대, 남태욱

2. C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10.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62,337,370원, 피고 C은 6,929,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95,9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모바일 banking 원격접속을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홍콩달러 등의 외화로 환전하여 취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D는 E과 F를 통하여 G에게 피해금 입금 및 환전용 계좌를 모집하게 하였고, G은 2019. 11. 4.경 H에게 “현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H은 위 제안에 따라 피해금 입금 및 환전을 위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경 원고에게 전화로 경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5억 3천만 원이 해외로 흘러나갔다. I에서 앱을 설치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모두 입출금 통장에 입금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9. 11. 5.경 ‘J’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OTP카드 번호를 받은 다음 원고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모바일 bankin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OTP 번호 등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가입된 적금을 해지한 후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6,9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G은 2019. 11. 5. 15:50경 H으로부터 위 6,950만 원을 포함한 110,5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G은 H으로부터 중국 마카오에서 환전 중개업을 하는 K을 소개받았고, K은 중국 마카오에서 환전 중개업을 하는 L을 통하여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 및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G은 2019. 11. 5. 16:29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으로부터 송금받은 110,500,000원 중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0,000원, 같은 날 16:33경 피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각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하고, 위 각 금원이 송금된 피고들 명의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고 한다).

마. L은 2019. 11. 5.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홍콩 달러 714,300원으로 환전하여 중국 마카오 소재 M호텔 로비에서 K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K은 이를 중국 마카오 소재 N 호텔에서 홍콩인 O(일명 P)에게 전달하였다.

바. E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F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71호로 기소되었고, 2021.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E이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노8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5. 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F도 성명불상자 및 E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00, 5265(병합)호로 기소되었고, 202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F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D, G, H은 성명불상자 및 E, F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126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아.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하여 H 명의 농협계좌에서 1,543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2,490원을 각 환급받았다.

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현재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100,333,672원이,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181,579원이 잔고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 22 내지 24,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 중 69,500,000원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금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원고가 위 피해액 중 204,033원을 피해환급금으로 반환받았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99,000,000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이 각 입금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62,366,370원[= 69,295,967원(= 69,500,000원 - 204,033원) × 99,000,000원 / 110,000,000원(= 99,000,000원 + 11,000,000원)], 피고 C은 6,929,596원(= 69,295,967원 × 11,000,000원 / 1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환전 업무를 하면서 환전 요청을 하는 K의 말을 만연히 신뢰하였고, 피고 C 또한 피고 B에게 만연히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로 하여금 69,295,96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9,295,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K의 환전 요청에 따라 G으로부터 99,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 714,300 달러를 K에게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은 외화 교환의 대가로 환전에 해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원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 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L의 부탁으로 환전 목적으로 L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제공한바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없다.

### 3. 판단

####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중국 마카오에서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던 L에게 2019. 1. 18.부터

2019. 11. 5.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 등을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도록 대여하였고, 피고 C도 마찬가지로 L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대여하였던 점, L은 K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1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홍콩 달러 714,300 달러로 환전하여 K에게 전달하였던 점, 결국 피고들이 송금받은 금원은 홍콩달러로 환전되어 제3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계좌의 대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환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각 계좌를 대여한 점, ② 피고들 명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금원을 이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체행위로 인하여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